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803

발의연월일: 2021. 3. 15.

발 의 자:고영인・이규민・김승원

김회재 · 강민정 · 홍정민

이해식 • 김주영 • 이용우

김상희ㆍ허 영ㆍ이용빈

양기대 · 임호선 · 이수진

정일영 • 이용선 • 서영석

유정주 의원(19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매월 10만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아동의 연령이 어린 2세까지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등 양육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동수당의 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영아기 특성상 종일·밀착 돌봄이 필요하고 부모가 가정양육을 선호하고 있어 실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0세 3.4%, 1세 36. 6%로 매우 낮은 상황임.

그럼에도 영아의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이용시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부모보육료 0-1세 47만원, 기관보육료 50 만원
- 어린이집 미이용시 양육수당: 0세 20만원, 1세 15만원 지급 이에 영아수당을 50만원까지 지원하여 현실적 정책을 실현하고 경제 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 영아발달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최고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및 제10조제4항).

법률 제 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 중 2세 미만의 영아에게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10조제3항 본문 중 "아동수당은"을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의 보육서비 스 이용권 또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1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이 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 적용례)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 당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 제3조(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 금액에 관한 적용 특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0만원"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원에서 50만원의 금액 중에서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 ④ (생 략)	지급액) ① ~ ④ (현행과 같
	음)
<u><신 설></u>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
	중 2세 미만의 영아에게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② (생 략)	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아동수당은</u> 현금으로 지급	③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	<u>당은</u>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	
로도 지급할 수 있다.	
	<u>.</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④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수당의	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라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u>정한다.</u>	3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또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1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u><신 설></u>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u>정한다.</u>